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97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5. 8

발 의 자 : 김해숙 의원 등 13인

☐ 제안이유

-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(2007. 11. 6공포)되어
시 조직의 부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
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(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)의 규정에 의하여
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
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부서명칭 개정(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)
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→ 성남시정보문화센터
-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
추가 (안 제5조제1항제5호)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정보문화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성남시문화재단”을 “성남문화재단”으로 하고
성남문화재단 다음에 “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”을 삽입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----- ----- <u>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</u> -- 다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----- ----또는 출연한 법인(성남산업진흥재단, <u>성남시문화재단</u> 등). 다만,----- ----- ② (생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<u>성남시정보문화센터</u> -- 다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또는 출연한 법인(성남산업진흥재단, <u>성남문화재단,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</u> 등). 다만,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□ 검토의견

- 2007. 11. 6자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기구 명칭이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성남시정보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기구 명칭을 일치시키고
- 2007. 8. 6자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성남문화재단의 조례상 명칭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
-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며 성남문화재단의 명칭을 바르게 정정 하는 사항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.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

【지방자치법】

제41조 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-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법시행령】

제42조 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)

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
 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 3.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.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하되,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
 4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 5.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·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·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)를 처리 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